

승강기 · 삭도공사업

■ 업무내용

- **승강기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삭도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 · 개설 ·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등록기준

1. 기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승강기설치공사

기술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전자
기사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삭도설치공사

기술사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5.05.13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승강기 · 삽도공사업	950,392원	1.5억원	43좌 (40,866,856 원)	53좌 (50,370,776 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장비
<p>■ 삽도설치공사</p> <p>(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p> <p>(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p> <p>(다) 동력원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p> <p>(라) 발전기 1대 이상</p>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어야 한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